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1.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30일, 진성준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3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24.11.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4.11.20.)

상정,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2024.11.21.)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2007년 현행법이 제정된 후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주도의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가 형성됨. 그 결과로 민간 장기요양 기관의 수에 비해 지방자치단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수는 매우 적은 실정임.

특히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입장에서 서비스 수요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농산·어촌 지역은 설치를 기피하게 되어 장기요양기관의 수가 부족하게 됨으로써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인권위는 2022년 4월 노인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국공립기관이 차지해야 하는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상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인구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지역불균형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공공 장기요양기관’과 이외의 기관이 운영하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으로 구별하여 정의하고,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건강보험공단이 공공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도

록 하되 농산어촌지역 및 도서·벽지지역에 우선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 제2조제4호¹⁾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²⁾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³⁾ 및 재가노인복지시설⁴⁾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함.

- 현행법에서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설립·운영주체에 따른 별도의 구분은 하지 않고 있으나,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

2)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3)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노인복지법」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주·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인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인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4.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5. 그 밖의 서비스 :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에서 설립형태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 등으로 구분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설립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⁵⁾, 「노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설치에 관한 지원근거를 두고 있음.⁶⁾

□ 그런데 2023년말 기준 전체 장기요양기관 수(입소시설: 6,269개소, 재가시설: 19,376개소) 대비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 수의 비율은 입소시설은 1.9%, 재가시설은 0.7%에 불과한 실정임.

- 현재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없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행법 제48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서울요양원 1개소를 운영 중에 있음.⁷⁾

□ 이와 관련하여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돌봄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차지하여야 하는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6)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 법 제3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①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공단으로 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3.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

③ 공단은 제2항제13호의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때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고려하여야 하고, 설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있음.⁸⁾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3년 8월 발표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공급부족 지역에 대한 요양시설 확충을 목표로 2027년까지 공립 요양시설·병원이 없는 53개 시군구에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 지원, 공급 부족지역에 대한 진입제도 개선 등을 추진 중에 있음.⁹⁾

- 보건복지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인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을 통하여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 일반요양시설 기능보강 및 치매전담형 전환(지원대상: 지방단체단체, 비영리민간법인)을 시행하고 있음.

□ 개정안은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을 ‘공공 장기요양기관’과 ‘민간 장기요양기관’으로 구분하고,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적정 수의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고 이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건강보험공단의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를 의무화하되, 농산어촌지역 및 도서·벽지지역에 우선설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서비스 수요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지역 등에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설치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공공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함으로써 농산어촌 등 취약지역에서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

8) 국가인권위원회, 노인돌봄 공공성 강화 및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2022. 4. 20.

9) 보건복지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 ~ 2027), 2023. 8.

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 다만, 현행법 제48조제2항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설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¹⁰⁾, 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건강보험공단이 공공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도록 규정할 경우 현행법 제48조의 내용과 상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¹¹⁾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김미애)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①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공단으로 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3.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

③ 공단은 제2항제13호의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때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고려하여야 하고, 설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1) 참고로 2010년 동 조항 개정시 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할 경우 민간의 장기요양기관 의 영업 등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현행법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었음. 제285회(임시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참조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